

## 2022년 제2차(재공고) 파주시청소년재단 공개경쟁(기간제) 직원 채용시험 공고

2022년 제2차(재공고) 파주시청소년재단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 
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1년 12월 17일

(재)파주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



### 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직종	구분	채용분야	채용인원(명)	직무내용	비고
기간제	계		14		
	청소년상담 복지센터 (청소년안전망)	선임 상담원	1	-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 - 청소년통합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- 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	
		상담원	1	-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 - 청소년통합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- 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	

청소년상담 복지센터	전일제 동반자	2	-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 및 지역자원연계 - 그 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관련업무
	시간제 동반자	10	-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 및 지역자원연계 - 그 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관련업무

## 2. 응시 자격기준

- 연령: 공고일 전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(정년) 미만인 자
- 파주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2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
  - ※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: 최종시험 예정일

**제12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 - 가.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『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9.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

○ 응시자격요건

- 임용직급 분야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 중 한 개 이상 항목에 충족하여야함

차수	구분	분야	채용인원 (명)	자격기준
제 2 차 (재 공 고)	청소년상담 복지센터 (청소년안전망)	선임 상담원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</li> <li>②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</li> <li>③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</li> <li>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</li> </ul>
		상담원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</li> <li>②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</li> <li>③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</li> <li>④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</li> <li>⑤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</li> <li>⑥ 청소년상담사 3급,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</li> </ul>

청소년상담 복지센터	전일제 동반자	2	<p>(자격요건 ①&amp;② 충족)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, <b>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</b></p> <p>① 관련자격증 소지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,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, 사회복지사 1급 이상, 상담심리사 2급 이상(한국상담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2급 이상(한국상담학회), 임상심리사 2급 이상, 직업상담사 2급 이상,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</li> </ul> <p>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 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(단,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)</li> <li>-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수행</li> </ul>
	시간제동반자	10	<p>① 관련자격증 소지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,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, 사회복지사 1급 이상, 상담심리사 2급 이상(한국상담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2급 이상(한국상담학회), 임상심리사 2급 이상, 직업상담사 2급 이상,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</li> </ul> <p>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 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(단,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)</li> <li>-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수행</li> </ul> <p>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소년(지도)학, 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, 보건학 및 상담·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 분야</li> </ul> <p>※ (①, ②, 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) 자격요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자 우선 채용</p>

※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

※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는 청소년지도사, 사회복지사, 평생교육사 등을 말함.

※ 청소년관련학과는 청소년학, 청소년지도학, 심리학, 교육학, 상담학 등과 장애인 관련 학과 등을 말함.

※ 청소년 관련 분야는 학교,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청소년 관련법에 의한 시설과 단체 등 청소년 유관기관을 말함.

## ○ 우대사항(시험 가산점수)

구분	내용
취업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</li> <li>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</li> <li>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</li> <li>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</li> <li>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</li> <li>-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</li> <li>-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</li> <li>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</li> <li>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</li> </ul>

- 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(기관별·직급별·직류별)로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- 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 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

## 3. 시험 방법

- 1차 시험: 서류전형(채용예정직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)
- 2차 시험: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)
  - ※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(경험, 상황, 발표, 토론면접 등)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(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 지침\_행정안전부 2021. 1. 29)
  - ※ 동점자 처리기준(우선순위):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연소자

## 4. 합격자 결정방법

### [서류전형]

-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함

## [면접시험]

-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“중상”(6점) 이상인 자 중 각 위원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. 다만, 5가지 평정요소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2인의 시험위원이 모두 “하”(2점)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 점수가 6점 이상이더라도 불합격됨.
- 2인의 시험위원이 평정한 합계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6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됨
- 서류 미제출자, 면접 불참자 등은 불합격으로 함
-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

## [재공고]

-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을 재공고 할 수 있음

## [추가합격자 결정]

-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
- ※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면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함

## 5. 채용일정

- 채용공고: 2021.12.17.(금) ~ 2021.12.24.(금)
- 응시원서 접수: 2021.12.20.(월) ~ 12.24.(금), 09:00~18:00
- 접수처
  - 방문접수: 파주시 시민회관길 40, 1층, 파주시청소년재단 정책기획과 운영지원팀
  - 등기우편 접수: 파주시 시민회관길 40(☎10932) 파주시청소년재단 정책기획과 운영지원팀

○ 접수방법: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

**< 방문접수 >**

- 평일 월요일~금요일(09:00~18:00), 점심시간(12:00~13:00) 접수제외
-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 가능

**< 등기우편 접수 >**

-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우편도달분에 한함
- 우편봉투 겉면 '2022년 제2차(재공고) 파주시청소년재단 응시원서' 문구 표기
- 등기우편 접수자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(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)

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: 2021.12.27.(월) 예정

○ 면접시험: 2021.12.28.(화) 예정

○ 최종합격자 발표: 2021.12.31.(금) 예정

○ 임용예정일자: 2022.01.03.(월)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파주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(www.pcy.or.kr) 채용공고란에 공고 예정

## 6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 1부<별지 제1호 서식>

○ 이력서 1부<별지 제2호 서식>

○ 자기소개서 1부<별지 제3호 서식>

○ 직무수행계획서 1부<별지 제4호 서식>

○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
※ 최근 6개월 이내 발급,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

※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·성적증명서 모두 제출

○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1부

※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(원본) 제출(팩스, 이메일출력본 불인정)

-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, 발급담당자 성명, 연락처 기재

-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

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(근무기간, 주당 근무시간, 직위(급), 담당업무,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)

※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,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받아 제출

※ 국민연금, 고용·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

(단,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)

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(시간제 포함)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. 프리랜서·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

○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(원본지참, 해당자에 한함)

-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

○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(해당자에 한함)

○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○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<별지 제5호 서식>

○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<별지 제6호 서식>

▶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

▶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(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, 어학능력성적표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

## 7. 보수 및 복무

□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청소년안전망) 선임상담원

○ 보 수: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내부 보수기준 적용

○ 근무기간: 2022.01.01.~2022.12.31.까지

- 근무시간: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40시간 근무
- 근무형태: 운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및 시간외 근로, 야간 근로, 주말, 공휴일에도 근무가능

□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청소년안전망) 상담원

- 보 수: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내부 보수기준 적용
- 근무기간: 2022.01.01.~2022.12.31.까지
- 근무시간: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40시간 근무
- 근무형태: 운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및 시간외 근로, 야간 근로, 주말, 공휴일에도 근무가능

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일제동반자

- 보 수: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내부 보수기준 적용
- 근무기간: 2022.01.01.~2022.12.31.까지
- 근무시간: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40시간 근무
- 근무형태: 운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및 시간외 근로, 야간 근로, 주말, 공휴일에도 근무가능

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제동반자

- 보 수: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내부 보수기준 적용
- 근무기간: 2022.01.01.~2022.12.31.까지
- 근무시간: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12시간 근무
- 근무형태: 운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및 시간외 근로, 야간 근로, 주말, 공휴일에도 근무가능

## 8. 기타사항

-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
-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-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(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)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·결정함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.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됨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파주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」 제17조에 의거하여 영리업무 종사가 금지됨  
(※영리업무: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)
- 상기 시험일정 등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
  - 채용절차 관련 문의: 파주시청소년재단 정책기획과 운영지원팀 (☎ 031-540-5209)